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공 증 서 류 의 보 존 에 관 한 규 칙
일 부 개 정 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위 규칙상 공증인 사무소 서류보관창고의 설비 재질 및 비치해야할 소방용품이 한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기술발달·상황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재질과 소방용품까지 허용하려는 것임(규제개혁 신산업 과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에 포함)

3. 주요내용

-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정한 성능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체를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에 적합한 구조체로 추가(안 별표1의 3.)
-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이상의 세라믹 파이버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실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이상의 구조체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성능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체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공증 서류보관창고에 설치할 소화기로 추가(안 별표1의 5.)

-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여야만 공중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소화기면 공중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액체형은 서류 멸실 위험을 고려하여 제외)
- 다.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외래어 표기를 정비함(안 별표1의 2, 3, 안 별표 2의 2, 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중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2.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이상의 세라믹 파이버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실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이상의 구조체(비내력벽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1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체로 하고 2중 시정장치를 할 것

가.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이상의 세라믹 파이버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실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이상의 구조체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1시간 이상의 차열성능이 있는 구조체

별표1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창고 안에 소방시설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능력단위 A급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할 것(액체계 소화기 제외)

별표2의 2.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이상의 세라믹
파이버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실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이상의 구조체(비내력벽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2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은 양면에 각각 두께 2mm이상의 철판을 붙이고 그 사이에 두께 25
mm이상의 세라믹 파이버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실리카
보드를 삽입하여 전체두께가 104mm이상이 되도록 하고, 2중 시정
장치를 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1.)

현행	개정안
2. (생략) 나.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 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실리콘 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이상의 구조체(비내력 벽의 경우에 한한다)	2. (생략) <u>다.</u>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이상의 세라믹 <u>파이버보드</u>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u>실리카</u> 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이상의 구조체(비내력 벽의 경우에 한한다)
3. 문은 양면에 각각 두께 2mm 이상의 철판을 붙이고 그 사이에 두께 25mm 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mm 이상의 고온용 실리콘 보드를 삽입하여 전체 두께가 104mm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중 시정장치를 할 것	3. 문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체로 하고 2중 시정장치를 할 것 가.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 이상의 세라믹 파이버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실리콘 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 이상의 구조체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성능 평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서 1시간 이상의 차열성능이 있는 구조체
5. 창고 안에 소방시설로 총 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를 설치할 것	5. 창고 안에 소방시설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능력단위 A급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할 것(액체계 소화기 제외)

(별표 2.)

현행	개정안
2. (생략) 나.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 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실리콘 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이상의 구조체(비내력 벽의 경우에 한한다)	2. (생략) 다. 두께 2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mm이상의 세라믹 파이버보드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실리콘 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mm이상의 구조체(비내력 벽의 경우에 한한다)
3. 문은 양면에 각각 두께 2mm 이상의 철판을 붙이고 그 사이에 두께 25mm 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	3. 문은 양면에 각각 두께 2mm이상의 철판을 붙이고 그 사이에 두께 25mm이상의 세라믹 파이버보드

께 75mm 이상의 고온용 실리콘보드를 삽입하여 전체 두께가 104mm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중 시정장치를 할 것	와 두께 75mm이상의 고온용 실리콘보드를 삽입하여 전체 두께가 104mm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중 시정장치를 할 것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과	
연 락 처	(02) 2110-3169